2022. 08. 22.(전면 개정)

학 칙 관 리

목 차

제 1장 총 칙

제 1조 목 적 2

제 2조 적용 범위 2

제 3조 기능별 책임 2

제 2장 학칙 재·개정 및 폐기 절차

제 4조 학칙 심의위원회 구성 2

제 5조 학칙 재·개정 및 폐기 절차 2

제 6조 학칙 번호 부여 2

제 7조 학칙 심의 2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 적)

본 학칙은 학칙의 재정·개정·폐지 및 발행 절차와 학칙 관리에 과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※ "학칙"이라 함은 미디어·광고학부의 행정 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, 반복적 행정 업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거나 또는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.

제 2조 (적용 범위)

본 학칙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에 적용한다.

제 3조 (기능별 책임)

① 학생회장은 미디어·광고학부 학칙의 정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.

② 학생회는 학칙의 모순 및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, 학생회장 및 학생회 집행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2 장 학칙 제·개정 및 폐기 절차

제 4조 (학칙 심의위원회 구성)

① 학칙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심의 별 대표자를 위원으로 편성하여 운용한다.

② 학칙 심의위원회 구성은「학칙 2 미디어·광고학부 위원회 관리」에 따른다.

제 5조 (학칙 심의위원회 구성)

학칙을 제、개정 및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 다만, 법령、훈령의 제、개정 및 폐지로 인해 단순 수정이 필요한 경우와 단순 오탈자 정정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4호의 절차를 생략하고 발령할 수 있다. (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의 과반수 이상 서명 시, 다음 절차로 진행할 수있다.)

※ 서명본은 발령 이후,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1. 제·개정 또는 폐지 이유서 초안 작성
2. 학생회 집행부 의견 수렴 및 서명
3. 실장단 의견 수렴 및 서명
4. 제2, 3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부생 15명 이상의 의견 수렴 및 서명

4-1. 필요에 의해 학부장 의견 수렴 및 서명

※ 학부장 서명이 없더라도, 학칙은 학생 자치기구와 자유성 확립을 위해, 학칙 발령이 가능하다.

5. 심의 결과 반영 후, 발령

제 6조 (학칙 번호 부여)

학칙 관리	학칙 1
위원회 관리	학칙 2
학생회 운영	학칙 3
실습실(소모임) 운영	학칙 4
선거 관리	학칙 5
감사 관리	학칙 6

제 7조 (학칙 심의)

① 학칙 심의 시기

1. 정　기 : 한 학기 단위. 수정 소요 파악 후, 방학 기간 동안 심의
2. 수　시 : 학생회장 필요 시 또는 법령·훈령의 재·개정 또는 폐지 시

② 정기 심의 및 학생회장 필요 시에 진행하는 심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.

③ 수시 심의는 별도의 절차 없이, 진행이 가능하다.

부　칙

1. 본 학칙은 학칙 1 제 2장 5조에 해당하는 서명이 끝나는 즉시 유효하다.
2.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및 사회과학대학 학칙을 적용한다.
3. 학칙 우선 순위는 미디어·광고학부, 사회과학대학, 총학생회 순으로 적용한다.

별 표 목 차

번　호	제 목	조 항	변 수
1	심의 위원회 서명 양식	제5조	제3면
2	학칙 제·개정 또는 폐지 이유서	제5조	제1면

작 성 자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학생회장 민경휘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

학칙 심의위원회(학생회 집행부) 의결서

□ 개 요

○ 일 시 / 장 소 : 'YY.MM.DD(요일) / 장소

○ 심의위원회 :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, 사업기획국, 운영복지국, 재무회계국, 디자인국, 소통협력국

□ 내 용

본 심의위원회는 학칙 제·개정 및 폐기 심의를 위해 편성됐으며, 적법한 절차를 통해, 국민대학교 사회과학 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한 학칙 심의를 진행함.

* 제·개정 및 폐기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한다.

□ 심의위원회 의결

구 분	직 책	학 번	성 명	의 결(O/X)	서 명
1	학생회장				
2	부학생회장				
3	사업기획국				
4	운영복지국				
5	재무회계국				
6	디자인국				
7	소통협력국				

20_____ . _____ . _____

찬성___표, 반대__표, 기권__표로 과반수가 찬성 / 반대 하였으므로, 본 심의 내용은 가결 / 부결 합니다.

학칙 심의위원회(실장단) 의결서

□ 개 요

○ 일 시 / 장 소 : 'YY.MM.DD(요일) / 장소

○ 심의위원회 :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, 영상제작실습실, 암실, 멀티미디어실습실, 광고PR학회, 로니즈, 워닝, 크러쉬, 책볼레, AMM

□ 내 용

본 심의위원회는 학칙 제·개정 및 폐기 심의를 위해 편성됐으며, 적법한 절차를 통해, 국민대학교 사회과학 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한 학칙 심의를 진행함.

* 제·개정 및 폐기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한다.

□ 심의위원회 의결

구 분	직 책	학 번	성 명	의 결(O/X)	서 명
1	학생회장				
2	부학생회장				
3	영상제작실습실				
4	암실				
5	멀티미디어실습실				
6	광고PR학회				
7	로니즈				
8	워닝				
9	크러쉬				
10	책볼레				
11	AMM				

20_____ . _____ . _____

찬성___표, 반대__표, 기권__표로 과반수가 찬성 / 반대 하였으므로, 본 심의 내용은 가결 / 부결 합니다.

학칙 심의위원회(학부생) 의결서

□ 개 요

○ 일 시 / 장 소 : 'YY.MM.DD(요일) / 장소

○ 심의위원회 :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, 사전모집 된 학부생 15명

□ 내 용

본 심의위원회는 학칙 제、개정 및 폐기 심의를 위해 편성됐으며, 적법한 절차를 통해, 국민대학교 사회과학 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한 학칙 심의를 진행함.

* 제·개정 및 폐기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한다.

□ 심의위원회 의결

직 책	학 번	성 명	의 결(O/X)	서 명
학생회장				
부학생회장				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6				
7				
8				
9				
10				
11				
12				
13				
14				
15				

20_____ . _____ . _____

찬성___표, 반대__표, 기권__표로 과반수가 찬성 / 반대 하였으므로, 본 심의 내용은 가결 / 부결 합니다.

학칙 제·개정 또는 폐지 이유서

□ 학칙 명칭 :

□ 작성자

직 책	성 명	학칙 번호	학칙 명칭
학생회장			

□ 제·개정 또는 폐지 이유

□ 주요 제·개정 내용(폐지 시 미작성)

학칙 2

2022. 08. 22.(전면 개정)

위 원 회 관 리

목 차

제 1장 총 칙

제 1조 목 적 2

제 2조 적용 범위 2

제 2장 위원회 편성

제 3조 각 위원회 역할 및 구성 2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 적)

본 학칙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 (적용 범위)

본 학칙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에 적용한다.

제 2 장 위원회 편성

제 3조 (각 위원회 역할 및 기능(붙임#1 참조))

① 각 위원회 대표자는 회의 목적, 일시, 장소,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들을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 소집은 회의 개최 6시간 전까지는 회의록과 함께 각 위원들에게 통보한다.

부 칙

1. 본 학칙은 학칙 1 제 2장 5조에 해당하는 서명이 끝나는 즉시 유효하다.
2.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및 사회과학대학 학칙을 적용한다.
3. 학칙 우선 순위는 미디어·광고학부, 사회과학대학, 총학생회 순으로 적용한다.

별 표 목 차

번 호	제 목	조 항	변 수
1	각 위원회 구성, 역할 및 기능	제5조	제1면

작 성 자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학생회장 민경휘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

각 운영/위원회 구성, 역할 및 구성

구 분	구 성	역 할 · 기 능	운 영 절 차
1. 학칙 심의위원회	• 학생회장/부학생회장 • 학생회 집행부 • 실장단 • 사전 모집된 학부생 15명	• 학칙 제·개정 및 폐기 심의	• 정기 - 한 학기 주기 • 수시 - 학생회장 필요 시 - 법령·훈령의 제·개정 또는 폐지 시
.2. 선거관리위원회	• 학생회장/부학생회장 • 학생회 집행부	• 미디어·광고학부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후보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구	• 발족 시기 - 선거 기간
3. 감사위원회	• 학생회장/부학생회장 • 실장단 • 참여 희망 학부생	• 미디어·광고학부 지원금 및 회비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기구	• 감사 일정 - 최소 한 학기 당 1회 실시 - 학생회장 필요 시 - 학부생 요청 시
4. 인수인계 위원회	• 학생회장/부학생회장 • 학생회 집행부 국장 • 실장단	• 미디어·광고학부 차기 연도 운영에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기구	• 발족 시기 - 선거 결과 공포 다음 날 - 학생회장 필요 시 - 운영위원회 요청 시
4. 공청회	• 학생회장/부학생회장 • 학생회 집행부 • 실장단 • 공청회 요구자 • 공청회 피요구자 • 참여 희망 학부생	• 미디어·광고학부생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구	• 개최시기 - 공청회 요구자가 있을 시, 일주일 이내로 방법, 일시, 장소를 알리고 개최한다. • 공청회 위원장 - 공청회 위원장 우선순위는 1. 학생회장 2. 부학생회장 3. 학생회 집행부 고학번 순 4. 실습실장 고학번 순 5. 소모임장 고학번 순 6. 부실습실장 고학번 순 7. 부소모임장 고학번 순 으로 한다.
5. 학생회	• 학생회장/부학생회장 • 학생회 집행부	• 미디어·광고학부 의결기관 역할	• 회의 소집 - 학생회장 필요 시 - 학생회 집행부 요청 시
6. 실장단	• 학생회장/부학생회장 • 실장단 • 참여 희망 학부생	• 미디어·광고학부 의결기관 역할	• 회의 소집 - 학생회장 필요 시 - 실장단 요청 시
7. 실습실	• 실습실장/부실습실장 • 실습실원	• 공동의 관심사 및 목적을 가진 미디어·광고학부생들의 모임	• 각 (부)실습실장에게 권한 위임
8. 소모임	• 소모임장/부소모임장 • 소모임원	• 공동의 관심사 및 목적을 가진 미디어·광고학부생들의 모임	• 각 (부)소모임장에게 권한 위임

학칙 3

2022. 08. 22.(전면 개정)

학 생 회 운 영

목 차

제 1장 총 칙

제 1조 목 적 ····· 3

제 2조 적용 범위 ····· 3

제 2장 학생회 편성

제 3조 학생회원 자격 ····· 3

제 4조 학생회원의 권리와 의무 ····· 3

제 3장 학생총회

제 5조 지 위 ····· 3

제 6조 구 성 ····· 3

제 7조 기능 및 권한 ····· 3

제 8조 의 장 ····· 3

제 9조 소 집 ····· 4

제 10조 탄 핵 ····· 4

제 11조 의결 및 공개 ····· 4

제 4장 학생회 운영위원회

제 12조 지 위 ····· 3
제 13조 구 성 ····· 3
제 14조 의결 및 공개 ····· 3
제 15조 업무 부서 ····· 3

제 2장 실장단 운영위원회

제 16조 지 위 ····· 3
제 17조 구 성 ····· 3
제 18조 의 장 ····· 3
제 19조 의결 및 공개 ····· 3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 적)

본 학칙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각 학부생들의 개성 발전을 도모하고,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창조적이며 발전적인 학문 연구를 지향함으로써 정의로운 민주사회의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적용 범위)

본 학칙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에 적용한다.

제 2 장 학생회 편성

제 3조 (학생회원 자격)

학생회원의 자격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의 모든 재학생에게 부여된다.
단, 휴학한 자는 자격이 일부 정지 되며, 대학원생은 본회의 회원에서 제외된다.

제 4조 (학생회원의 권리와 의무)

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, 본회의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, 회비를 납부할 권한을 가진다.
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.
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나 회원의 정당한 자치활동을 침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.

제 3 장 학생총회

제 5조 (지 위)

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.

제 6조 (구 성)

학생총회의 구성원은 본회의 전 인원으로 구성한다.

제 7조 (기능 및 권한)

① 학생총회는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.
②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.
③ 학생총회는 학생회장 · 부학생회장 · 실습실장 · 소모임장 탄핵 소추 및 파면권을 갖는다.
④ 학칙 제·개정안 발의 및 심의권을 갖는다.

제 8조 (의 장)

학생총회의 의장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학생회장이 된다.
단, 학생회장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, 부학생회장도 부재 시 실장단 구성원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9조 (소　집)

① 학생총회는 긴급을 요하거나, 필요 시 소집한다.

② 학생총회는 학생회장 개인, 학생회 집행부 1/3 이상, 재학생 1/50 이상의 요구 중 하나라도 충족 시, 학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③ 학생총회의 소집은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은 후 24시간 내에 공고하여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. 단, 소집 요구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7일이 초과할 수 있다.

제 10조 (탄　핵)

학생총회는 학생회장·부학생회장·실습실장·소모임장(이하 실장단)이 본 학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탄핵 또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

① 해당 집단의 회원 1/10 이상의 요구로 실장단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.

② 실장단 탄핵 의결 시 해당 집단의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, 참석 인원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, 탄핵 대상자는 참석 인원 및 회원 수에서 제외한다.

제 11조 (의결 및 공개)

① 학생총회는 출석 인원의 제한 없이 출석 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탄핵의 경우는 제 10조에 따른다.

② 의장은 학생총회 종료 후 결과를 7일 이내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.

제 4 장 학생회 운영위원회

제 12조 (지　위)

학생회 운영위원회(이하 학생회 집행부)는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를 대표하는 학생 자치기구 및 최고 집행기구다.

제 13조 (구　성)

① 학생회 집행부는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, 학생회 운영위원회원들로 구성된다.

②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학생회 운영위원회원들을 구성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.

③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

※ 학생회 집행부는 납부할 권한만을 갖는다.

제 14조 (의결 및 공개)

① 학생회 운영위원회 의결은 학생회 집행부 2/3의 참석으로 이루어지며, 출석 인원 중 2/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※ 학생회 집행부가 아닌, 미디어·광고학부 모든 재학생이 참석이 가능하다.
단, 집행부 2/3의 참석이 있어야만, 의결이 이루어진다.

② 학생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은 회의 종료 후, 원하는 학생회원이 있다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제 15조 (업무 부서)

학생회 집행부는 아래 각 부서를 두고,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① 기획국 : 본회의 행사 및 운영의 계획, 조정에 관한 모든 사항

② 집행국 : 본회의 행사 및 운영을 직접적으로 집행

③ 사무국 : 본회의 회계 및 재정 운영감사에 대한 모든 사항

④ 소통국 : 본회의 행정 및 학생복지에 관한 모든 사항

⑤ 홍보국 : 본회의 사업에 관한 대·내외 홍보의 모든 사항

⑥ 위의 부서와 관련된 학생회 집행부 체계는 해당 시기마다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는 범위에서 무제한으로 개편될 수 있다.

제 5 장 실장단 운영위원회

제 16조 (지 위)

실장단 운영위원회는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버금가는 학생 자치기구 및 최고 집행기구다.

제 17조 (구 성)

실장단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, 각 실습실(소모임)장과 부실습실(소모임)장으로 구성된다.

제 18조 (구 성)

실장단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학생회장이 된다.
단, 학생회장 부재 시, 부학생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, 부학생회장도 부재 시, 실장단 구성원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9조 (의결 및 공개)

① 실장단 운영위원회 의결은 실장단 1/2의 참석으로 이루어지며, 출석 인원 중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※ 실장단이 아닌, 미디어·광고학부 모든 재학생이 참석이 가능하다.
단, 실장단 1/2의 참석이 있어야만, 의결이 이루어진다,

② 실장단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은 회의 종료 후, 해당 실습실(소모임)에 결과를 공개할 권한을 가진다.

부 칙

1. 본 학칙은 학칙 1 제 2장 5조에 해당하는 서명이 끝나는 즉시 유효하다.
2.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및 사회과학대학 학칙을 적용한다.
3. 학칙 우선 순위는 미디어·광고학부, 사회과학대학, 총학생회 순으로 적용한다.

작 성 자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학생회장 민경휘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

학칙4

2022. 08. 22.(전면 개정)

실 습 실 (소 모 임) 운 영

목 차

제 1장 총 칙

제 1조 목 적 ····· 2

제 2조 적용 범위 ····· 2

제 2장 실습실(소모임) 편성

제 3조 실습실(소모임)원 자격 ····· 2

제 4조 실습실(소모임)원의 권리와 의무 ····· 2

제 5조 실습실(소모임) 회칙 ····· 2

제 3장 실습실(소모임)장

제 6조 지 위 ····· 2

제 7조 업무 및 권한 ····· 2

제 8조 탄 핵 ····· 3

제 9조 선 출 ····· 3

제 10조 임 기 ····· 3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 적)

본 학칙은 자유로운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각 학부생들의 개성 발전을 도모하고, 이를 기반으로 창조적이며 발전 적인 학문 연구와 자유로운 대학 문화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다.

제 2조 (적용 범위)

본 학칙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에 적용한다.

제 2 장 실습실(소모임) 편성

제 3조 (실습실(소모임)원 자격)

① 실습실(소모임)원의 자격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의 모든 재학생에게 부여된다.

② 군휴학을 제외한 2학기 이상의 비활동자는 해당 실습실(소모임)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단, 다시 자격을 얻고자 할 경우, 실습실(소모임)장의 허가 있을 시, 가능하다.

③ 대학원생은 본회의 회원에서 제외된다.

제 4조 (실습실(소모임)원의 권리와 의무)

① 실습실(소모임)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, 실습실(소모임)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② 실습실(소모임)의 회칙을 준수하고, 회비를 납부할 권한을 가진다.

③ 실습실(소모임)의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.

④ 실습실(소모임) 회원의 정당한 자치활동을 침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.

제 5조 (실습실(소모임) 회칙)

실습실(소모임) 회칙은 본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회칙을 가진다.

제 3 장 실습실(소모임)장

제 6조 (지위)

실습실(소모임)장은 실습실(소모임)을 대표하는 자이다.
단, 실습실(소모임)장 부재 시, 부실습실(소모임)장이 직무를 대행하며, 부실습실(소모임)장도 부재 시, 회원 구성원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7조 (업무 및 권한)

실습실(소모임)장은 회원의 자유로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업무 진행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의사를 수렴하고 학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 또한, 업무 진행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갖는다.

① 실습실(소모임)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, 실습실(소모임)의 자율성 및 체계 유지의 의뮤를 가진다.

② 실습실(소모임) 간의 사업 및 행사 일정 조정 업무를 맡는다.

③ 실습실(소모임) 내 자체 감사 진행 권한을 갖는다.

④ 실습실(소모임) 운영에 전반적인 권리를 가진다.

⑤ 실장단 운영위원회의 대표로서 참석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.

제 8조 (탄　핵)

① 실습실(소모임)장은 본 학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, 탄핵 또는 해임을 강요 받을 수 있다.

② 해당 실습실(소모임)원 요청 시, 실습실(소모임)장은 학생총회의 무조건 참석을 해야한다.

③ 방식은 학칙 3의 제 3장에 따른다.

제 9조 (임　기)

실습실(소모임)장의 임기는 선거년도 종강총회부터 차기년도 종강총회까지로 정한다.

부　칙

1. 본 학칙은 학칙 1 제 2장 5조에 해당하는 서명이 끝나는 즉시 유효하다.
2.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및 사회과학대학 학칙을 적용한다.
3. 학칙 우선 순위는 미디어·광고학부, 사회과학대학, 총학생회 순으로 적용한다.

작 성 자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학생회장 민경휘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

학칙 5

2022. 08. 22.(전면 개정)

선 거 관 리

목 차

제 1장 총 칙

제 1조 목 적 ····· 4

제 2조 적용 범위 ····· 4

제 3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····· 4

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

제 4조 구 성 ····· 4

제 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····· 4

제 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····· 4

제 3장 선거인 명부

제 6조 선거인 명부작성 ····· 5

제 7조 명부 열람 ····· 5

제 9조 이의 신청과 결정 ····· 5

제 10조 선거인 명부 사본의 교부 ····· 5

제 4장 후보자

제 11조 후보자 자격 ····· 5
제 12조 후보자 등록 ····· 5
제 13조 입후보자 심사 ····· 6

제 5장 선거 운동

제 14조 선거 운동 기간 ····· 6
제 15조 규칙 확정 회의 ····· 6
제 16조 선거 홍보물 ····· 6
제 17조 공청회 개최 ····· 6
제 18조 금지 규정 ····· 6
제 19조 징 계 ····· 6

제 6장 투 표

제 20조 선거일 ····· 7
제 21조 투표소 설치 ····· 7
제 22조 투표 시간 ····· 7
제 23조 투표 방법 ····· 7
제 24조 투표율 산정 방법 ····· 7

제 7장 개 표

제 25조 개표 방법 ····· 7
제 26조 개표 참관 ····· 8
제 27조 무효표 ····· 8
제 28조 당선인 결정 ····· 8
제 29조 투표용지 보관 ····· 8

제 8장 재선거

제 30조 조 건 8

제 9장 인수인계위원회

제 31조 구 성 9

제 15조 인수인계위원회 구성 9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 적)

본 학칙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의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며,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사회 건설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 (적용 범위)

본 학칙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에 적용한다.

제 3조 (선거권 및 피선거권)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전 재학생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단, 사전신청한 휴학생의 선거권은 인정한다.

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

제 4조 (구 성(붙임 #1,2 참조))

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선관위)는 미디어·광고학부 선거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족하는 기구이다.

① 미디어·광고학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각가 위원장, 부위원장으로, 선거관리위원은 현 학생회 집행부로 구성한다.

② 선관위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,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.
단, 사퇴 이후에는 피선거권이 주어지며,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.

③ 선관위 임기는 선관위 전향부터 개표 집계 결과 공포 시까지 유지된다.

제 5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)

① 후보자 등록 및 자격 심사

② 선거 운동 관리

③ 선거인 명부 작성

④ 개표 및 투표행사에 대한 유효, 무효 판정 및 선포

⑤ 당선인 결정

⑥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기타 심사

⑦ 기타 선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

제 6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)

① 선관위는 결정된 선거 일정에 의해 선거 공고 7일 전에 소집한다.

② 선관위 회의는 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위원장 판단 하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선관위의 의결은 선관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단, 무효표 판정, 이의제기, 이의 신청 처리는 과반수 출석과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부장, 선과위의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3 장 선거인 명부

제 7조 (선거인 명부 작성)

선거를 실시할 때마다,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.

① 휴학생, 대학원생, 외국인 학부생은 선거인에서 제외한다.
단, 사전신청한 휴학생은 선거인에 포함한다.

② 1·2·3학년 재학생만 총 투표 대상자로 명부 작성을 한다.
단, 4학년 및 5학년 재학생은 예비 명부에만 포함시켜, 투표를 할 경우, 총 투표 대상자에 추가시킬 수 있다.

제 8조 (명부 열람)

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작성 완료일부터 명부 확정일까지 미디어·광고학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.

제 9조 (이의 신청과 결정)

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,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확인이 될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구도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선관위는 이의 신청이 있은 후 72시간 이내에 심사·결정하며, 그 신청이 가결됐을 경우, 즉시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선거권자에게 통지하며, 부결됐을 경우 타당한 이유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

③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3일 전에 확정되며 확정된 이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.

제 10조 (선거인 명부 사본의 교부)

선관위는 피선거권자가 선거인 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을 했을 때 명부 작성 완료인 경우, 지체 없이 명부의 사본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.

제 4 장 후보자

제 4조 (후보자 자격)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학생으로 학생자치활동에 열정을 가진 자로서 각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① 정후보 : 3학기 이상 이수한 자

② 부후보 : 2학기 이상 등록한 자

※ 정·부후보 모두 유급한 학기도, 등록한 것으로 인정한다.

③ 학생회비를 납부 한 지, 1학기 이상이 된 자

④ 어느 자치 기구에도 소속되지 않은 자

제 5조 (후보자 등록(붙임 #3 참조))

입후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등록 마감일 18시까지 다음의 서류를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.

① 재학생 증명서(정·부후보 각 1부, 휴학생은 휴학증명서)
② 입후보 등록 신청서
③ 입후보 서약서
④ 입후보 공고문
⑤ 선거운동본부 명단(운영할 경우만, 제출)

제 13조 (입후보자 심사)

①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72시간 내에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.
단,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.
② 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발견됐을 경우 즉시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.
③ 입후보자 심사가 끝난 후, 즉시 후보자에게 통지하며, 미디어·광고학부생들에게 6시간 이내 공지한다.

제 5 장 선거 운동

제 14조 (선거 운동 기간)

① 선거 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공지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까지 할 수 있다.
단, 이외의 기간에는 일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.

제 15조 (규칙 확정 회의)

선거 간, 공정하고 청렴한 선거를 위해 입후보자들을 선관위가 소집하는 회의를 말한다.
① 선관위는 후보 등록 후 규칙 확정 회의 일자를 공고한다.
② 각 입후보자는 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선전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온라인 홍보 여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.
③ 입후보자 간 논의를 통해 2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에서 결정하여 각 입후보자에게 통보한다.

제 16조 (선거 홍보물)

입후보자를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물품과 방법을 말한다.
① 선거 홍보물에는 허위 사실이나 타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개제할 수 없다.
② 미디어·광고학부생들에게 혐오감 및 불안감을 조성하는 선거 홍보물은 사용할 수 없다.
③ 선관위에서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이라 판단 시, 즉각 폐기 시킬 수 있다.
④ 규칙확정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의 홍보물을 운용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를 통제하지 않는다.

제 17조 (공청회 개최)

① 선관위는 공청회를 1회 개최할 수 있다.
단, 입후보자 및 선거인 중 1/3의 요청이 있을 시 무제한 개최할 수 있다.
② 선관위는 개최 시 공청회 개최 방법, 일시, 장소를 공지해야 한다.

제 18조 (금지 규정)

선거 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, 선거운동본부는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①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

② 폭력,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
③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④ 선거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
⑤ 규칙 확정 회의 내용에 반(反)하는 행위
⑥ 이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

제 19조 (징 계)

①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선거 운동간 학칙에 위배되거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함이 보일 경우 경고를 줄 수 있다.
② 경고는 1회당, 1일 선거 운동 금지를 당한다. 선거 운동 기간 이후, 경고를 받을 경우, 경고 2회로 간주한다.
③ 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 해당 입후보자는 즉각 해임 당한다.
④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경고 및 해임 당할 경우 언론정보학부생들에게 24시간 동안 공지해야 한다.
⑤ 입후보자는 경고를 당할 경우 24시간 이내 사과문을 게시하여야 한다.

제 6 장 투 표

제 20조 (선거일)

선관위는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.

제 21조 (투표소 설치)

① 선관위는 투표 시작 전까지 투표를 설치하되 선거일 3일 내에 투표 장소를 결정하여 공지해야 한다.
② 기표대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기표대 안에는 어떠한 표시를 하면 안 된다.
단, 입후보자의 표어 및 소속과 성명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할 수 있다.
③ 선관위는 투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선관위원을 2명씩 배치한다.
④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 인원들은 선관위원 제한 구역을 들어올 수 없으며, 의도적으로 들어올 경우 경고를 줄 수 있다.
※ 상황에 따라 온라인 선거가 진행될 경우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해 위 과정이 생략될 수 있으며 선관위 재량으로 진행된다.

제 22조 (투표 시간)

투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단, 오후 6시에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는 시간이 넘어도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.
※ 상황에 따라 온라인 선거가 진행될 경우 전자투표 시스템에 의해 위 과정이 생략될 수 있으며 선관위 재량으로 진행한다.

제 23조 (투표 방법)

① 선거인은 학부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고, 투표 용지 1매를 받아 기표소에서 용지에 기표 후,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.
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.
③ 선거인의 잘못으로 기표를 잘못한 경우라도 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.

④ 동일 기표대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.

⑤ 선관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선관위원과 입후보자 참여 하에 투표함을 자물쇠로 봉하여 개표 장소로 옮겨야 한다.

※ 상황에 따라 온라인 선거가 진행될 경우 전자투표 시스템에 의해 위 과정이 생략될 수 있으며 선관위 재량으로 진행한다.

제 24조 (투표율 산정 방법)

투표율 산정은 전체 투표자 수/(선거인 명부 수+예비 명부 중 투표한 수)로 한다.

제 7 장 개 표

제 25조 (개표 방법)

① 선관위원장, 선관위원, 각 입후보자 개표 참관인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 확인 후 개표를 실시한다.

② 개표는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만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표 참관인은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개표 완료 후 개표 참관인들에 한해서 무효표에 대한 이의를 받을 수 있다.

④ 개표가 종료되면 위원장은 개표 집계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.

※ 상황에 따라 온라인 선거가 진행될 경우 전자투표 시스템에 의해 위 과정이 생략될 수 있으며 선관위 재량으로 진행한다.

제 26조 (개표 참관)

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입후보자를 제외한 개표 참관인 1인을 선정할 수 있다.
단, 선거운동본부를 운영하지 않을 시에는 입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.

②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.

※ 상황에 따라 온라인 선거가 진행될 경우 전자투표 시스템에 의해 위 과정이 생략될 수 있으며 선관위 재량으로 진행한다.

제 27조 (무효표)

① 정규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

② 어느 후보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

③ 2개 이상의 후보자 란에 기표한 것

④ 어느 후보자 란에 기표한지 식별이 불가능 한 것

⑤ 선관위에서 제시한 기표 방법으로 기표하지 않은 것

⑥ 그 이외의 유、무효표 판정은 선관위원장이 한다.

제 28조 (당선인 결정)

① 당선인 결정은 선거인 명부 중 50%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.
단,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로부터 받은 징계 횟수가 적은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, 그것마저도 같을 시에는 해당 후보자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.

②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 중 50% 이상의 투표와 유효표 중 2/3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

③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당선인을 공고해야 한다.

제 8 장 재선거

제 30조 (조 건)

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.

※ 1~3호의 경우 선관위에서 심의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며, 4호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실시한다.

① 후보자 혹은 당선인이 없을 경우

②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가 결정이 됐을 경우

③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, 사퇴 및 사망하게 됐을 경우

④ 임기 중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에 결원이 생긴 경우

단, 4호의 경우에는 잔여 임기가 180일 미안일 때에는 실시하지 않는다.

제 9 장 인수인계위원회

제 31조 (구 성)

인수인계위원회(이하 인수위)는 미디어·광고학부 차기 연도 운영에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발족하는 기구이다.

① 미디어·광고학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각각 위원장, 부위원장으로, 인수인계위원은 현 학생회 집행부 국장과 실장단으로 구성한다.

② 인수위 임기는 개표 집계 결과 공포 다음 날부터 7일까지 유지된다.

단, 학생회 선거 무산 시 실장단 인수인계는 기존에 공고된 개표 일정으로 진행한다. 각 실습실(소모임)은 차기 연도 실장단을 선거 마감일까지 선출하여 해당 일정과 동일하게 인수인계를 진행한다.

제 32조 (인수인계위원회 운영)

① 해당 연도 인수위는 차기 연도 운영위원회(차기 연도 학생회, 실장단)와 상호 협력 하에 인수·인계를 진행한다.

② 인수위는 해당 연도 인수·인계 자료를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해야할 의무를 가진다.

③ 인수위는 인수인계 후 완료 사실을 위원장에게 72시간 이내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.

④ 인수위는 차기 연도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위원장의 판단 하에 재소집할 수 있다

부 칙

1. 본 학칙은 학칙 1 제 2장 5조에 해당하는 서명이 끝나는 즉시 유효하다.
2.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및 사회과학대학 학칙을 적용한다.
3. 학칙 우선 순위는 미디어·광고학부, 사회과학대학, 총학생회 순으로 적용한다.

작 성 자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학생회장 민경휘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

사 퇴 공 고

단 위 :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

소 속 :

직 책 :

성 명 :

사퇴 사유 :
제 _____대 미디어·광고학부 차기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,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학칙 5 4장 11조에 의거, 현재 재임 중인 미디어·광고학부 학생회 _____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.

상기 본인은 미디어·광고학부 학생회 '_____'의 _____직을 맡아, 학부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재임하였으나,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_____년 _____월 _____일 부로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에 미디어·광고학부 재학, 휴학 중인 학분들의 양해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

_____ 년 ____월 ____일
미디어·광고학부 _____학번
작성자 : _____(인)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
_____년 학생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발족 공고

미디어·광고학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학생회장 선출을 위해 학칙 5 2장 4조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한 업무를 총괄, 관리합니다.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 및 집행권을 당해 연도 학생회로부터 위임 받은 기구로서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

미디어·광고학부 학생회장

□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

미디어·광고학부 부학생회장

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

미디어·광고학부 운영위원 성 명	미디어·광고학부 운영위원 성 명
미디어·광고학부 운영위원 성 명	미디어·광고학부 운영위원 성 명
미디어·광고학부 운영위원 성 명	미디어·광고학부 운영위원 성 명
미디어·광고학부 운영위원 성 명	미디어·광고학부 운영위원 성 명
미디어·광고학부 운영위원 성 명	미디어·광고학부 운영위원 성 명
미디어·광고학부 운영위원 성 명	미디어·광고학부 운영위원 성 명
미디어·광고학부 운영위원 성 명	미디어·광고학부 운영위원 성 명

이상 ____인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칙5 2장 5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)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.

① 후보자 등록 및 자격 심사
② 선거 운동 관리
③ 선거인 명부 작성
④ 개표 및 투표행사에 대한 유효, 무효 판정 및 선포
⑤ 당선인 결정
⑥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기타 심사
⑦ 기타 선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

_____ 년 ____월 ____일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선거관리위원회

후보 등록 신청서

구 분	정후보	부후보
성 명		
학 번		
등록 학기		
개표 참관인		
핵심 공약		
공약 이행 계획		

정후보 입후보자 : (인)

부후보 입후보자 : (인)

선거관리위원장 : (인)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선거관리위원회

입후보 서약서

선거운동본부 _____의 정후보 _____와(과) 부후보 _____은(는) 20_____년도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학생총선거에 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,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를 이룰 것을 서약합니다.

1. 본 선본은 학생회장 정·부 후보 자격으로 선거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 타 선본에 대한 비방 및 중상모략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. 본 선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를 방해하지 않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엄격히 준수하며 인정할 것을 서약합니다.

3. 본 선본은 선거와 관련하여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선거시행세칙을 숙지하며 이를 지킬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.

4, 본 선본은 선거세칙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을 행하였을 경우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세칙에 따른 징계나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____. ____ . ____

서약자 소속 :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

정후보 입후보자 : _____ (인)
부후보 입후보자 : _____ (인)
선거관리위원장 : _____ (인)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선거관리위원회

입후보 공고문

약 력	사 진	사 진	약 력
	성 명(정후보)	성 명(부후보)	

후보자 인사말
선거 공약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선거관리위원회

선거운동본부 명단

구 분	학 번	성 명	서 명
1			
2			
3			
4			
5			
6			
7			
8			
9			
10			
11			
12			
13			
14			
15			

20____. ____ . ____

정후보 입후보자 : _____ (인)
부후보 입후보자 : _____ (인)
선거관리위원장 : _____ (인)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선거관리위원회

학칙 6

2022. 08. 22.(전면 개정)

감 사 관 리

목 차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목 적 3

제 2조 적용 범위 3

제 2 장 감사위원회

제 3조 구 성 3

제 4조 구성 시기 3

제 5조 권 한 3

제 3 장 감사특별위원회

제 6조 구 성 3

제 7조 구성 시기 3

제 8조 권 한 3

제 4장 감 사

제 9조 감사 대상 ····· 4
제 10조 감사 시기 ····· 4
제 11조 감사 자료 ····· 4
제 12조 결과 보고 ····· 4

제 4장 징 계

제 9조 목 적 ····· 4
제 10조 징계 사유 ····· 4
제 11조 징계 내용 ····· 4
제 12조 징계 방법 ····· 4
제 13조 이의 제기 ····· 5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 적)

본 학칙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각 자치 기구의 올바르고 공정한 예산 집행으로 학부생들에게 신뢰를 쌓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여 각 자치 기구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 (적용 범위)

본 학칙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에 적용한다.

제 2 장 감사위원회

제 3조 (구 성)

감사위원회는 미디어·광고학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각각 위원장, 부위원장으로, 감사위원은 현 학생회 집행부로 구성한다.

제 4조 (구성 시기)

평시에는 학생회 집행부로 운영되나,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다.

제 5조 (권 한)

감사위원회 미디어·광고학부 각 자치 기구의 예·결산 제출 요구 및 예·결산 문제에 대해 시정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.

제 2 장 감사특별위원회

제 6조 (구 성)

① 감사특별위원회는 미디어·광고학부 실장단 지원자 중 최고 학번이 위원장으로, 각 실장단은 위원으로 구성된다.

② 감사특별위원을 희망하는 학부생은 감사위원장의 판단 하, 구성시킬 수 있다.
단, 학생회 집행부 인원은 구성시킬 수 없다.

제 7조 (구성 시기)

감사특별위원장 필요 시,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다.

제 8조 (권 한)

감사특별위원회는 미디어·광고학부 학생회 집행부의 예·결산 제출 요구 및 예·결산 문제에 대해 시정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.

제 4 장 감 사

제 9조 (감사 대상)

본 학칙에 의한 감사 대상은 미디어·광고학부 내에 있는 모든 자치 기구를 대상으로 한다.
단, 감사 집행 기구는 감사 대상에 따라 다르다.

제 10조 (감사 시기)

감사 시행 7일 전에 각 기구에 통보해야 되며, 시기는 다음과 같다.

① 학부생 50명 이상의 서명 요구가 있을 경우
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③ 종강 월의 마지막 주

제 11조 (감사 자료)

① 예·결산안
② 영수증철
③ 통장사본
④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

제 12조 (결과 보고)

각 위원회는 감사가 종료된 후, 7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원하는 미디어·광고학부생이 있다면 열람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.

제 5 장 징 계

제 13조 (목 적)

감사 대상 기구가 올바른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였을 때 이에 대한 시정의 촉구와 반성과 전진의 계기를 주어 이후 더 발전적이고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.

제 14조 (징계 사유)

① 감사 자료가 미제출 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 했을 경우
② 감사 대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불응했을 경우
③ 집행 내용에 오차가 발생한 경우
④ 각 기구 부서장들이 올바른 역할 수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
⑤ 기타 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

제 15조 (징계 내용)

① 주의
② 경고
③ 지원금 감축 (減縮)

지원금 감축 징계를 받은 실습십(소모임)은 지원금 1/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원을 정지 시킨 후 현 학생회 지원금으로 이월시켜야 한다. (단, 최대 50만원 감축 가능)
학생회 집행부의 경우 학생회비 중 1/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정지 시킨 후, 다음 학생회로 이월 시켜야 한다. (단, 최대 100만원 집행 정지 가능)

④ 해당 기구 부서장에 대한 탄핵 발의

⑤ 학교 당국에 의한 처벌 요구

제 16조 (징계 방법)

징계 방법은 각 위원회의 2/3의 찬성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주의 2회 = 경고1회, 경고 3회 = 지원금 감축으로 집행한다.

제 17조 (이의 제기)

징계를 받은 기구 및 대상자는 징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이 때, 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재심의 하여 해당 기구 및 대상자에게 통보해줘야 하며, 추후 재심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.

부 칙

1. 본 학칙은 학칙 1 제 2장 5조에 해당하는 서명이 끝나는 즉시 유효하다.
2.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및 사회과학대학 학칙을 적용한다.
3. 학칙 우선 순위는 미디어·광고학부, 사회과학대학, 총학생회 순으로 적용한다.

작 성 자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 학생회장 민경휘

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·광고학부